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자격·인증 관리실태 점검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6. 10.

감 사 원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전기공사 실적확인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① 사단법인 한국전기공사협회 ②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조 치 기 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한국전력공사

내 용

1. 사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해 확인하는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전기공사협회¹⁾ (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위 협회를 지휘·감독하면서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이하 “□□”이라 한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전기공사 실적자료로 제출하는 등 위 협회에 공사실적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 이를 근거로 2014. 11. 14. 위 협회로부터 허위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하 “실적확인원”이라 한다)²⁾을 발급

1) 「전기공사업자단체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83호)에 따라 1999. 7. 1.부터 위 위탁업무 수행

2) 위 협회가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지난 5년간 실적 신고를 받아 이를 심사한 뒤 확정·공시된 연도별 실적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증명서

받아 2014. 11. 18.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한전”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2014. 12. 31. 한전과 “2015년도 배전공사(강북지사 고압A) 협력회사 도급계약”(금액: 3,138,144,000원, 계약기간: 2015. 1. 1.~2016. 12. 31.,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협회 업무담당자가 위 계약 체결 전 한전의 요청에 따라 □□이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허위실적에 대한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한편, 한전은 위 계약 체결 후 허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계약 해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력개발원 △△팀장 ▲▲▲은 2013. 4. 3.부터 2015. 4. 1.까지 위 협회 교육중부회 사무국장의 직위에서 2014. 12. 5. 한전의 요청에 따라 □□이 위 계약의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실적확인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실적에 대한 확인업무를 처리하였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전기공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위 협회에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협회의 「전기공사실적 검토요령 및 심사지침」(2014. 12.) “1. 전기공사실적 심사 기본사항” 등에 따르면 전기공사실적을 심사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인지, 실제 해당업체가 수행한 실적인지, 실적증명서 및 첨부서류가 정확한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

록 되어 있다. 특히 같은 지침 “2.-다-② 태양광발전설비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용전점검(검사)필증 사본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2014. 11. 20.과 같은 해 11. 25. 2차례에 걸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의 적격심사 후순위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실적이 허위이고 일부 공사현장에서 시공실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며 실적 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4. 12. 5. 한전으로부터 위 계약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한전에 제기된 “□□이 한전에 허위의 실적확인원을 제출하였다”는 민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위 협회에 제출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다.

위 사람의 실적확인 결과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등의 시공실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에 대한 낙찰예정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이 2010. 2. 16. 및 2011. 2. 15. 위 협회에 제출한³⁾ 실적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그 당시 실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 전력 태양광발전소 200kW 건설공사” 등의 발주자와 관련 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에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용전점검(검사)필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시공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의 민원에 대해서는 □□의 실적신고서상 발주자 에

3) 당초 2009년 및 2010년분 실적은 주식회사 ◇◇◇라는 업체가 신고한 것인데, 2014. 10. 24. 주식회사 ◇◇◇가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에 합병되었으므로 해당 실적은 □□의 실적으로 승계

게 시공사실을 확인 요청하여야 하는데도 2014. 11. 27. 당초 실적신고서상 발주자도 아닌 시공업체인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같은 해 12. 1. ☆☆☆주식회사로부터 □□의 2009년분 태양광발전소 공사실적 중 “연동주중심·주끝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등 4건에 대하여 “부분하도급 사실이 있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당초 □□의 실적신고서상에 “연동주중심·주끝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주식회사 ★★에너지 등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신고내용과 상이하고 공사를 실제 수행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진정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의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동일한 태양광발전소 실적에 대하여 또다시 한전이 실적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하여 □□에 세금신고자료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제출한 실적신고서상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유로 2014. 12. 8. ◎◎◎에, 같은 해 12. 10. 한전에 □□의 실적에 허위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4. 12. 12.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부여받아 같은 해 12. 31. 한전과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별표 1] “주식회사 □□의 허위 공사실적 명세”와 같이 □□의 2009년분 실적 27건(2,544백만 원) 중 18건(2,362백만 원)⁴⁾, 2010년분 실적 16건(2,358백만 원) 중 6건(1,185백만 원) 등 계 24건(3,547백만 원)⁵⁾의 세금계

4) ◇◇◇주식회사가 □□에 부분하도급을 주었다고 회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실적 4건 포함

5) 도급금액 500만 원 미만 실적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

산서가 모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그 중 주식회사 <<<이 발주자로 신고되어 있는 “역삼동 <<<빌딩 리모델링 전기공사” 등 3건의 경우 주식회사 <<<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임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위 24건 중 태양광발전소 시공실적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별표 2] “태양광발전소 존재 여부 확인 결과”와 같이 “>>>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4개 태양광발전소가 모두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고6),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고7)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8) 해당 실적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사현장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취업규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3. 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민원 처리 업무 부적정

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

- 6) 구 「전기사업법」(2009. 5. 21. 법률 제96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7) 한국에너지공단은 FIT(발전차액지원)사업으로 2001. 10. 11.부터 2011. 12. 31.까지 신청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한 전력거래 가격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2009년 및 2010년 당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발전차액 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음
- 8) 구 「전기사업법」(2009. 5. 21. 법률 제96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전은 위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 13. ○○○○으로부터 □□의 2009년 및 2010년분 실적 중 허위실적이 있으므로 위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와 제7조에 따르면 시공실적 증명은 위 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고, 적격심사 대상 기업은 적격심사서류로 위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전은 2014. 10. 30. 위 계약의 입찰을 공고하여 같은 해 11. 12. □□을 적격심사 대상 1순위로 선정함에 따라 같은 해 11. 18. □□으로부터 실적확인원 등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은 뒤, 같은 해 11. 26. 및 12. 1. 두 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이 제출한 실적확인원에 허위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민원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전은 “2항”과 같이 2014. 12. 5. 위 협회 서울중부회에 전기공사

실적 재확인을 요청하여 같은 해 12. 10. 실적 확인 결과 허위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받자 같은 해 12. 31. □□과 위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였다.⁹⁾

그러자 ○○○은 2015. 1. 13. 한전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번에는 □□의 2009년 및 2010년분 실적 중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발주자로 되어 있는 실적 4건¹⁰⁾(계 282,342천 원)의 경우 위 발주자들이 해당 공사에 대한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협회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과의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다.

더욱이 위 확인서는 위 발주자들이 □□의 시공사실이 없음을 직접 확인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한전에 허위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한전은 위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적위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원이 또다시 제기되었으므로 위 계약 체결 이후라도 위 협회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허위실적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제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했다.

그런데 한전은 2015. 1. 21. 위 협회 중앙회에 방문하여¹¹⁾ □□의 실적신고서상 세금계산서와 실적증명서 등을 대조한 후 태양광발전소 공사 실적 8건만 발주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해당 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인

9) 위 계약 체결 전인 2014. 12. 19. 및 같은 해 12. 22. ○○○은 한전에 □□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실적이 허위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진정과 민원을 두 차례 더 제기한 바 있음

10) 주식회사 ♠♠♠의 경우 “♡♡♡개선전기공사” 1건(80,428천 원)과 주식회사 <<<의 경우 “역삼동 ◀◀◀빌딩 리모델링 전기공사”, “암사동 ♥♥♥ 신축 전기공사”, “♣♣빌딩변압기용량증설공사” 등 3건(계 201,914천 원)

11) 한국전력공사 각 지역본부와 2015년 배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허위실적에 관한 민원이 계속되는 등에 따라 위 공사 본사에서는 실적 재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2015. 1. 21.부터 3일간 위 협회 중앙회에서 각 지역본부 담당자들이 소관 계약상대자인 전기공사업체들의 실적신고자료를 검증하였으며,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2015. 1. 21. 1일간 재무자재팀 및 배전운영팀 소속 직원 4명이 위 검증작업에 참여하였음

정한 주식회사 ♡♡♡ 등 발주자에 대해서는 위 협회에 확인요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한전은 □□이 “2항”과 같이 허위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2016. 3. 30. 현재까지 □□과 위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㉔ 이 건 업무담당자 ▲▲▲은 경찰이 □□에 대하여 조사 중이었다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실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당초 실적신고 시 제출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도 일치하였기 때문에 □□에 별도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람이 위 실적확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은 허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해 위 계약을 낙찰받게 되므로 한전과 ○○○이 공정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실적 재확인을 요청하였는데도 실적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경찰 조사 중임을 그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¹²⁾

㉕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위 협회로 하여금 실적확인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허위실적은 전기공사법령에 따라 삭감 조치하는 한편, 위 협회에 위탁한 사무의 감독을 강화하

12) 위 협회는 2014. 11. 27. 허위실적에 대한 직원들의 부실심사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평가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점검(검사)필증 등을 확인하는 등 각종 검증을 통하여 거짓임을 판별 가능한데도 그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실심사로 평가한 바 있음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㉔ 위 협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통한 허위실적은 삭감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며, 실적확인업무 관련 성실의무를 위반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민원 처리 업무 부적정’ 관련

㉕ 한전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에 대한 허위실적 확인 통보를 받아 계약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㉖ 다만 위 본부 재무자재팀은 2014. 12. 10. 이미 위 협회로부터 □□의 실적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받았고, 위 민원 제기 당시에는 ○○○○이 제기한 계약 체결금지가처분신청 ‘진행’ 중이었으며, 2015. 1. 26. ○○○○은 민원과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진행’ 중이며 이상 민원제기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12. 10. 위 협회 서울중부회가 □□의 실적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한 것은 2015. 1. 13. ○○○○이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이었고, 위 민원 내용이 주식회사 ♡♡♡ 등 발주자가 거래사실 없음을 직접 확인하여 주는 등의 근거를 들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었으므로 위 민원제기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민원에 따라 적격심사서류의 허위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지 아니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장으로 하여금

① 전기공사 실적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을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고

② 주식회사 □□의 2009년 및 2010년분 전기공사 허위실적 24건(계 3,546,427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① 전기공사 허위실적을 제출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15년 배전공사(강북지사 고압A 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허위의 실적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을 위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의 허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허위실적 신고업체 발주기관 통보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사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한 이들에 대해 확인하고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국가사무를 사단법인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¹⁾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3. 3.~3. 30.)에 확인한 결과, 위 협회가 ‘2014년 실적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416개 허위실적 신고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한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여 그중 215개 업체가 545건(계 375,907백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 협회는 허위실적 신고업체들에 대하여 허위실적 삭감 및 과태료 부과외 등 「전기공사업법」에 정한 조치는 하였으나 한전 등

1) 「전기공사업자단체 지정 고시」(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83호)에 따라 1999. 7. 1.부터 위탁업무 수행

발주기관에 허위실적 신고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허위실적 신고업체를 발주기관에 미통보

「전기공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위 협회는 공사업자의 공사수행 상황 등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행정기관, 발주자 등에 제공하고,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²⁾하여 공시³⁾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위 협회는 2014. 3. 21. 한전 배전공사 도급 계약⁴⁾시기마다 발생하는 허위실적 신고로 인한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위 협회에 신고⁵⁾된 공사실적의 재검토계획⁶⁾을 수립하고, 먼저 같은 해 4. 7.부터 4. 18.까지 동일전력주식회사의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62억 원) 등 131개 업체로부터 허위실적(계 2,174억 원)을 자진신고⁷⁾ 받았고, 같은 해 5. 12.부터 8. 31.까지 실적

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실적 평가액(=연평균 공사실적액)에 기술능력 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을 합하여 산정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31.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4) 한전이 2년마다 800개 정도의 전기공사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여 관할지역의 소규모(8천만 원 이하) 배전공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연간 1.14조 원 규모의 한전 내 가장 큰 계약임. 1980년 3월 도입 이후 36년간 시행 중

5)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 15.까지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해당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6) 2014. 3. 18. 제480회 이사회에서 허위실적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협회 임원·위원업체, 최근 5년간 승계 및 피승계업체 등이 신고한 2009년부터 2012년분의 4개 연도 실적을 재검토하기로 의결

재검증을 통하여 334개 업체의 허위실적(계 3,048억 원)을 확인⁸⁾하는 등 [별표 1] “2014년 실적 재검토에 따른 허위실적 신고업체 명세”와 같이 416개⁹⁾ 업체가 허위실적(계 5,222억 원)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26. 업체별 허위실적을 삭감한 후 같은 해 10. 2. 시공능력 재평가를 거쳐 같은 해 10. 7. 산업통상자원부에 과태료 부과¹⁰⁾를 의뢰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였으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발주기관에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시 당해 공사 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경험은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경험 등의 평가는 ‘관련 협회 등’¹¹⁾으로부터 통보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최근 5년(또는 3년)간의 자료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¹²⁾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¹³⁾하도록 되어 있다.

7) 자진신고 시 실적삭감과 시공능력 재평가, 과태료 처분의뢰 이외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안내

8) 허위실적자료 제출에 대하여 자진신고서 또는 확인각서를 제출받음(허위실적자료 제출을 인정하지 않아 직권 취소한 주식회사 현광 제외)

9) 자진신고 131개 업체, 허위실적 적발 334개 업체 계 465개 업체 중 49개 업체는 자진신고서 제출 후 실적 재검증 시 허위 실적이 또 적발(중복)되어 계 416개 업체

10) 당시 「전기공사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전기공사 사실적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제재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

11) 사단법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12) 업체가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과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 등’에서 증명한 자료로 함

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6개월, 허위서류 등을

따라서 위 협회는 발주기관이 허위실적 신고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적절한 공사업자 선정 등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실적 제출업체 및 조치 현황 등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하였고, 시공능력 재평가 이후 적격심사 시 허위실적 관련 문제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허위실적 신고업체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2014. 12. 5.부터 12. 11.까지 7일간 회원사만 열람 가능한 위 협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 한전 등 발주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¹⁴⁾

그 결과 한전은 허위실적을 제출한 ♣♣♣주식회사와 “남교DL외2 과부하 해소 감리용역 계약”(9,100만 원) 등 계 28건(계 2,294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4. 10. 1.부터 2014. 12. 23.까지 [별표 2] “허위실적 신고업체의 한전 발주 계약 낙찰 현황”과 같이 215개 업체가 한전과 배전공사 계약 73건(계 240,566백만 원)을 포함하여 계 545건(계 375,907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실적 신고업체가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조치¹⁵⁾를 면하고 한전 발주 계약의 입찰에 제한 없이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기공사업법」을 보완하여 허위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14) 이와 관련하여 위 협회 경상남도회(윤리위원회)는 2014. 10. 16. 허위실적 신고업체에 대한 벌칙 부과 및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같은 해 11. 20. 한전 배전공사 계약의 공정한 적격심사를 위한 명단 공개 요구 민원을 전달

15) 416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해서는 공사업자가 신고한 허위실적을 근거로 위 협회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류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바, 위 업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계약에 총 382,521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업체별로 허위실적 신고 연도가 다르므로 해당 허위실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실적 신고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전기공사업법」 하위 지침에 발주기관 통보의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협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허위실적 신고업체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건설경기의 침체와 「전기공사업법」상 발주기관 통보의무가 없어 형사처벌 등 모든 법적조치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단법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허위실적 신고업체를 확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적정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규정 등 전기공사업 등록관리지침」등에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